

정기공연 및 작품전시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

- 2020년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 준수 →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람
 - 당초 보조금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이 일치해야 함
 -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요망 (연초 계획한 집행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 제출 후 집행)
 - 예산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, 계좌이체 등을 이용(현금 인출 금지)
 - 향후에는 현금 직접 사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공지 후 환수 조치할 예정임
 - 의무적으로 체크카드 사용,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바람
 - 지출 증빙서류에 구입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등이 아닌 계좌이체내역을 영수증으로 간주하고 첨부하는 경우가 있음.
 - 계좌이체내역과는 별도로 지출명세가 표기된 영수증 첨부 필요
- 공개행사 보조금 별도 계정(통장 등) 설정하고 관리 [통장 타 용도와 혼용 금지]
 - 특히 자부담, 후원금 등은 별도 통장으로 사용 및 별도로 회계내역 관리
-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, 보조금 통장 잔액이 0원이어야 함
- 집행내역별 별도 건별 결제 처리 [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비교 정산 예정]
- 지출 건별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과 결제 후 집행 [담당자 날인 필]
- 회계장부 및 정산서류 일자별 정리 관리 [지출 및 영수일자 일치 바람]
- 공연물품 등 비품 구입 시, 영수증, 거래명세표 및 증빙사진 등 반드시 첨부 바람
- 중식비, 간식비, 간담회비, 업무추진비 사용 자제
 - [지출할 경우 일자, 내용, 참석인원, 산출내역, 목적 등을 자세히 기재 바람]
- 무형문화재 공연 및 전시와 명백한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지출 금지
-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- 출연료(소득세)는 원천징수 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영수증 제출
 - 과세최저한 및 원천징수 세율
 - 출연료, 인건비 등 12만5천 원 이상 지급 시 지급액의 8.8% 세액 공제 후 출연자에게 지급 (공제한 원천세액은 납부 후 영수증 제출)
- 회계 증빙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